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312

발의연월일: 2025. 5. 1.

발 의 자: 민형배·강유정·손명수

조계원 • 이성윤 • 김재원

이해민 • 박민규 • 황정아

안태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전체이용가 게임물 회원가입시 요구되는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여 청소년의 게임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 게임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.

현행법은 청소년이 휴대전화, 아이핀 등 본인 명의의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등급분류상 전체이용가 게임물임에도 PC 게임에 회원가입조차 할 수 없습니다. 또 회원가입시 요구되는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동의는 영화나 OTT 등 타 산업에는 없는 의무규정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.

이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, 본인인증과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고자 합니다. 또, 게임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통해 청소년 유해 정보를 차단, 관리하는 등 체계적으로 청소년 을 보호하고자 합니다(안 제12조의3 등).

법률 제 호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3제1항제1호 중 "게임물 이용자의"를 "게임물(제2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게임물을 말한다) 이용을 위한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청소년의"를 "청소년의 게임물(제21조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게임물을 말한다) 이용을 위한"으로 한다.

제3장에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5조(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등) ①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는 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,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2조의3에 따라 게임물 내에서 유통되는 음란·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(이하 "청소년유해정보"라한다)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(이하 "청소년보호책임자"라한다)를 지정하여야한다.
 - ② 청소년보호책임자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해당하는 자 중에 지정한다.
 - ③ 청소년보호책임자는 게임물 내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·관리하고,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소년

보호업무를 하여야 한다.

④ 그 밖에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의3(게임과몰입 예방조치	제12조의3(게임과몰입 예방조치
등)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[「정	등) ①
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	
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	
항제1호의 정보통신망(이하	
"정보통신망"이라 한다)을 통하	
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	
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	
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는 게	
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을	
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	
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	
물 이용 방지 조치(이하"예방	
조치"라 한다)를 하여야 한다.	
1.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	1. 게임물(제21조제2항제2호부
시 실명 • 연령 확인 및 본인	터 제4호까지의 게임물을 말
인증	한다) 이용을 위한
2. <u>청소년의</u> 회원가입 시 친권	2. 청소년의 게임물(제21조제2
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	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게
보	<u>임물을 말한다) 이용을 위한</u> -

3. ~ 7. (생 략) ② ~ ⑦ (생 략) <신 설> -----

3. ~ 7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등) ①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 배급업을 영위하는 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,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「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2조의3에 따라게임물 내에서 유통되는 음란 ·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(이하 "청소년유해정보"라 한다)로부터 청소년을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"라 한다)를 지정하여야 한다.

- ② 청소년보호책임자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 보 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해당하는 자 중에 지정 한다.
- ③ 청소년보호책임자는 게임물 내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·관

리하고,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의 청소년 보호계획을 수립하 는 등 청소년 보호업무를 하여 야 한다.

① 그 밖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